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311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억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1) 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경북 고령군 C 전 1,691㎡와 D 임야 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의 대리인이라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E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200,000,000원의 약정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2019가단62588)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위 법원으로부터 2022. 4.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2. 5. 12.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계약금으로 입금된 1억 원을 G회사 H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공장 준공 후 잔금입금시 원고 계좌로 송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원고를 속인 후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계약금 반환 약정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거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5. 11. 27.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금을 몰취 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99다58471 판결, 2021다2496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민사판결을 배척하고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거나 단순히 원고가 변심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1) 청구원인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5. 8. 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날짜가 2015. 8. 25.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16. 8. 26.은 단순 오키로 본다.